

(앞쪽)

식품원료 한시기준 제2019-3호

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

신청인	대표자	김관수
	업체명	농업회사법인 호미(주)
	업체 소재지	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8, 2층 203호 (전화번호) 055-942-2324 (Fax) 055-944-2325
	수출국	태국
	수출국 업체명	HERB ONE CO., LTD
	수출국 업체 소재지	80/2 MOO1 BANSAHAKORN MEA ON CHIANG MAI 50130
원료명(제품명)	파비플로라 생강 뿌리 분말	
유효기간	지정고시까지	

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.

2019년 9월 6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※ 붙임자료

1. 원료명(제품명)
2. 제조기준
3. 기타 인정의 요건

(뒤쪽)

변경내용		
년월일	내용	담당자 직·성명 (서명 또는 인)

[붙임]

(인정번호 : 제2019 - 3호)

구분	인정내용
원료명	◦ 파비플로라 생강 뿌리 분말 (학명 : <i>Kaempferia parviflora</i> Wall. ex Baker)
제조기준	◦ 제조방법 뿌리 → 세척 → 증숙 → 절단 → 건조 → 분쇄 * 분쇄공정은 국내 제조 ◦ 기준 총 아플라톡신 : 15.0µg/kg 이하 (단, B ₁ 은 10.0µg/kg 이하이어야 함)
기타 인정의 요건	◦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